

2017 국가직 9급 생활안전분야 추가선발 관세법(나책형)

- 해설 : 아모리이그잼 학원 이명호 교수 -

1. 「관세법」상 세관장이 해당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청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관세환급금 지급 결정의 취소
- ②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 ④ 보세사의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1. 정답 ①

[2018 기출문제집 490쪽 9번과 10번 사이에 추가]

관세법상 '세관장'이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법 제328조에 규정된 10가지로 한정된다.

- 1. 법 제164조제6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 2. 법 제165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 3~8. (생략)
- 9. 법 제255조의2제5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 10. (생략)

2.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로 옳은 것은?

-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된 때
- ②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고처분을 한 때
- ④ 관세포탈죄로 벌금 처벌을 받은 때

2. 정답 ②

[2018 기출문제집 57쪽 2번과 3번 사이에 추가]

법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에 따라 관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을 때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이 때 과세권자(세관장)의 관세징수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면 과세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일 뿐, 정지 사유가 사라져 정지되었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면 과세권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는 납세의무 소멸시효가 되지 못한다.
- ③, ④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과 함께 납세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3. 「관세법」상 관세범의 현행범 및 조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공무원은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밀수입 물품에 해당되어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범죄행위를 제지할 수는 있지만 영장 없이 체포할 수는 없다.

④ 세관공무원은 관세법 조사로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3. 정답 ③

[2018 기출문제집 476쪽 1번과 2번 사이에 추가]

세관공무원이 관세법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법 제297조). 관세법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법 제298조 제1항).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영장 발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① 법 제110조 제3항, ② 법 제299조 제1항, ④ 법 제303조 제1항.

4. 「관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원칙적으로 (㉠)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라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 ㉡

- ① 2 3
- ② 3 5
- ③ 5 3
- ④ 5 10

4. 정답 ④

[2018 기출문제집 57쪽 2번과 3번 사이에 추가]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묻는 문제이다.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법 제21조 제1항).

5.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한다.
- ②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 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한다.
- ③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과세가격 산출 시 이를 가산한다. 다만, 가산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 ④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관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일정한 경우 해당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정답 ②

[2018 기출문제집 89쪽 24번과 25번 사이에 추가]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뺀다(법 제30조 제2항).

④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해당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법 제30조 제3항). 즉 관세평가 제1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0조 제3항 단서). 문제에서 '일정한 경우'란 단서 부분을 말한다.

6. A사가 최빈개발도상국인 B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다음의 여러 관세율이 경합되는 경우 「관세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우선하여 적용될 관세율은?

- ① 기본관세 8%
- ② 일반특혜관세 0%
- ③ 상계관세 5%
- ④ 국제협력관세 3%

6. 정답 ③

[2018 기출문제집 155쪽 2번과 3번 사이에 추가]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품목이라면 기본관세, 일반특혜관세, 상계관세, 국제협력관세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상계관세(법 제57조)를 가장 우선하여 적용한다.

7. 관세법령상 물품의 수출입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가 무세인 물품은 수입신고하는 때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 ②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 ③ 관세 보전을 위하여 세관장은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물품이라도 원산지 표시가 수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정답 ①

[2018 기출문제집 413쪽 4번과 5번 사이에 추가]

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는 수입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영 제246조 제5항).

- ②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법 제237조).
- ③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 및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법 제228조, 영 제235조).
- ④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물품이라도 원산지 표시가 수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 제238조 제1항, 영 제245조 제1항)). 다만,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영 제245조 제1항 단서).

8.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인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는 부과할 수 있지만 법인세는 부과할 수 없다.
- ② 세관장이 관세의 체납처분을 위해 수입물품이 아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경우 다른 내국세나 공과금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 ③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통관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일괄하여 징수한다.
- ④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해당 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법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8. 정답 ①

[2018 기출문제집 19쪽 21번과 22번 사이에 추가]

법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9가지 내국세 이외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② '세관장이 관세의 체납처분을 위해 수입물품이 아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경우'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법 제3조 제2항).

③ 통관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어야 한다(법 제4조 제2항).

④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해당 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법 제4조 제1항).

9. 관세법 상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② 관세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③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④ 보세전시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9. 정답 ①

[2018 기출문제집 263쪽 16번과 17번 사이에 추가]

세관공무원은 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정환급을 포함한다)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법 제110조 제2항).

10.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관세청장의 전자문서중계사업에 관한 지도나 감독을 위반한 경우 관세청장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나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중단되지 않는다.

③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함이 원칙이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때이다.

10. 정답 ③

[2018 기출문제집 107쪽 55번과 56번 사이에 추가]

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법정가산요소가 되는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영 제20조 제1항). 다만 이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영 제20조 제2항). 문제에서는 제2항의 예외가 있으므로 제1항의 규정이 원칙임을 밝혔다.

①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관세청장의 전자문서중계사업에 관한 지도나 감독을 위반한 경우 관세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327조의3 제3항). 이 경우 세관장은 청문을 하여야 한다(법 제328조). 다만 관세청장은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327조의3 제4항).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법 제23조 제2항).

④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이다(법 제16조).

11. 「관세법 시행령」상 납세의무자가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②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 ③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④ 신고한 물품이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11. 정답 ④

[2018 기출문제집 102쪽 46번과 47번 사이에 추가]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영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에 해당한다.

12. 「관세법」상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관세는?

- ① 조정관세
- ② 덤핑방지관세
- ③ 보복관세
- ④ 긴급관세

12. 정답 ④

[2018 기출문제집 175쪽 27번과 28번 사이에 추가]

문제 전체가 긴급관세의 정의이다(법 제65조 제1항).

13. 「관세법 시행령」상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최근 4년 이내에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 ② 최근 4년 이내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③ 최근 4년 이내에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④ 최근 4년 이내에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13. 정답 ①

[2018 기출문제집 264쪽 17번과 18번 사이에 추가]

영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는 다음과 같다. 법 제110조의3(과세조사 대상자 선정) 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다.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

14. 「관세법 시행규칙」상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관세법 제 229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외국적 선박에 의해 채집한 물품
- ②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도축된 동물로부터 채취한 물품
- ③ 당해 국가의 영역이 아닌 공해에서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해 포획한 물품
- ④ 당해 국가에서의 외국인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14. 정답 ②

[2018 기출문제집 381쪽 9번과 10번 사이에 추가]

법 제229조 제1항 제1호(완전생산기준)에 의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규칙 제74조). 도축은 완전생산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1.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 2.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 3.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의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 4.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
- 5.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 6. 당해 국가 또는 그 선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15. 관세법령상 관세의 납세의무자 및 부과와 징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관세법」 규정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물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 ②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13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관세법」 제39조에 따라 부과징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세관장이 심한 결과 세액에 과다함이 있음을 알게 되어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의 환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과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모두 그 납부일이다.
- ④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15. 정답 ③

[2018 기출문제집 67쪽 21번과 22번 사이에 추가]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이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지만,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다(영 제7조 제2항).

① 법 제19조 제1항, ② 법 제19조 제10항, ④ 법 제25조 제3항.

16. 「관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관세사 및 보세사의 자격 요건
- ②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 ③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사업자의 지정
- ④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

16. 정답 ①

[2018 기출문제집 500쪽 38번과 39번 사이에 추가]

보세사의 자격 요건은 법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에 규정되어 있지만, 관세사의 자격 요건은 「관세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②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은 관세법 별표에 규정되어 있다.
- ③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사업자의 지정은 법 제327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 ④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은 법 제324조에 규정되어 있다.

17. 관세법령상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보증인은 「관세법」이 아닌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더라도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②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관세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 ③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 ④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7. 정답 ①

[2018 기출문제집 281쪽 8번과 9번 사이에 추가]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19조 제1항).

18. 관세법령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공인 심사 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
-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율 적용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상호 조건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통관 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④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관세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18. 정답 ②

[2018 기출문제집 440쪽 58번과 59번 사이에 추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법 제255조의2 제3항). 관세율 적용상의 혜택이 아니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이다.

19. 관세법령상 외국물품을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광양항
- ② 대전세관장이 허가한 보세구역외장치장소
- ③ 서울세관 지정장치장
- ④ 통관우체국을 제외한 체신관서

19. 정답 ④

[2018 기출문제집 364쪽 11번과 12번 사이에 추가]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법 제213조 제1항).

1. 개항, 2. 보세구역, 3. 법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7. 통관우체국.

- ① 광양항은 개항에 포함된다.
- ② 대전세관장이 허가한 보세구역외장치장소는 법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에 포함된다.
- ③ 서울세관 지정장치장은 보세구역에 포함된다.
- ④ 체신관서는 보세운송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관우체국만 보세운송 구간에 포함된다.

20. 관세법령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및 면세업무와 관련된 조약 등에 의하여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로서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자가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 ②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선박·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 50만원 이상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은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 ④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제외)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20. 정답 ④

[2018 기출문제집 223쪽 31번과 32번 사이에 추가]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제외)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법 제96조 제2항).

- ①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및 면세업무와 관련된 조약 등에 의하여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로서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자가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법 제88조 제1항, 규칙 제34조 제2항).
- ②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법 제96조 제1항). 다만,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선박·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 50만원 이상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은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규칙 제48조 제7항).
- ③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